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천과 과제

송정부(상지대 교수)

I. 서론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도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와 사회복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거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정부의 주도 아래 시행되었으나 지방자치가 되고 부터는 민간복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공적사회복지체계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체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민간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입법예고안은 주로 ① 민간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개편을 위한 것과, ② 시·도별 사회복지협의회를 독립법인체로 조직, 그리고 ③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조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이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2항과 3항)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개편은 시와 도만을 예시했지 정작 필요한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이 시·군·구를 제외한 발상은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 및 민간사회복지, 즉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왜냐 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초영역인 시·군·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기초가 없이 중앙만 있기에 과거와 같은 선언적 조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또 한국의 사회복지발전에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시·군·구로 규정하며 시행하는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한국적 적용과 실천 과제를 위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 나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한국적 실천모델로서 협의회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고 둘째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들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성격규정이며 셋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들의 운동론적 전개 방안의 모색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사회문제 및 지역의 복지문화를 발전시켜보고자 강원도 원주시민들은 1995년 9월 1일 기초단체로서는 최초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원사협 등의 지금까지 진행을 토대로 우리 나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들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사례로 제시해 본다.

II. 지역사회복지협의회들의 성격규정

1952년 2월부터 시작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들의 역사를 보면 협의회의 기능과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역사적·사회적 배경 아래 새로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들의 성격을 규정하여 활동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본요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활동지침’을 책정하여 협의회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51년 1월 중앙 사회복지 협의회(현재의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이래 10년간의 활동을 집약하여 ‘사회복지협의회기본요항’¹⁾등을 설정했다. 이 요항은 그후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으며 현재까지 협의회 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 즉 일본의 기본요항은 협의회의 성격, 기능, 조직, 직원(인력 수급) 등을 규정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협의회들의 ‘기본요항’과 ‘활동지침’이 있어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적인 법인조직을 가진 기관으로서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빨리 구성하여 상호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일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들의 성격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밖에 생활 개선 향상에 관련 있는 공사 관계자의 참가, 협력을 얻어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이라는 협의회의 성격 규정이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들의 성격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며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 밖에 생활개선 향상에 관련 있는 공사 관계자의 참가, 협력을 얻어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 지역협의회들의 목적, 목표,

1) 全國社會福祉協議會「社會福祉關係資料集」1 1986 p.51, 同 資料集11 1993 p.263.

일본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적인 문서로서는 ① 社會福祉協議會の基本要綱及び構想 (1950년) ② 市區町村社會福祉協議會 當面の活動方針 (1957년) ③ 社會福祉協議會基本要項 (1962년) ④ 市區町村協活動強化要項(1973년) ⑤ 社協基盤強化の指針 (1982년) ⑥ 區市町村社會福祉協議會運營の手引(1985년) ⑦ 新·社會福祉協議會基本要項(1992년)이 있다.

원리, 원칙, 역할, 기능, 조직운영, 운동, 계획 등을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협의회 활동이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Ⅲ.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의 문제

1. 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은 크게 회원, 사무처, 지방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회원에 대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1항 각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정회원·별정 회원·특별회원·명예 회원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각종 민간기관을 육성·발전시키고 민간복지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현재 회원의 자격(한사협 정관 제6조), 회원의 가입(제7조) 등에 대해 기준과 제한을 완화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기업인, 종교인 기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의 가입·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지역의 사회문제·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게 회원의 구성을 주민 전체로 조직해야 한다. 즉 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원주시의 경우는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집단 및 개인이 모두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 위원회 및 분과를 조직화하여 위원회 및 분과 활동을 활발히 하게 했다.

- (1) 전문가 집단 :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및 연구자, 사회복지관련 학과 교수, 변호사 및 보건·의료전문가 (의사, 약사 등),
- (2)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전문가
- (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기관
- (4) 사회복지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 (5) 사회복지사업관련분야의 기관·단체 및 관계자 : 아동·청소년·부녀위원, 보육시설 단체 및 원장·교사, 갱생보호시설·단체 및 위원,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등 관련분야의 기관·단체, 위원
- (6) 시민·사회단체 : YMCA·YWCA, 소비자모임, 여성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 원주지역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JC) 등 원주지역 경제단체, 개신교·카톨릭·불교 등 원주지역 종교단체
- (7) 공사의 사회복지관련 후원회,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후원자
- (8) 정치인 등 지역사회인사, 시민, 지방의회 (시의회·도의회)의원 등

- (9) 지역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자치조직 또는 주민회원
- (10) 지역상공인, 경제인, 체육회·체육인
- (11) 이외 기타 지역복지발전에 필요한 단체, 기관, 주민 등

회원현황(1997년 11월말 현재)

| 구 | | 분 | 인 | 원 |
|-------|---|---------|-------|-----------|
| 개 | 인 | 정 회 원 | 435 | 명 |
| | | 평 생 회 원 | 14 | 명 |
| 단 | 체 | 정 회 원 | 62 | 단체 |
| | | 평 생 회 원 | 2 | 단체 |
| 준 회 원 | | | 1,812 | 명 |
| 계 | | | 2,261 | 명/ 64개 단체 |

2. 이사회 및 임원

미국의 이사회는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방대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이사회, 기능별 부서의 회장, 과별 위원회 그리고 대의위원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회원들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반드시 비전문가와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어도 2/3가 비전문가라야 한다. 보통 위원회(council)의 회장과 기능별 부서 회장은 비전문가이어야 한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경우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2인, 감사2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21명이다. 이사들의 직업은 교수3명, 변호사2명, 사회복지단체장4명, 도시의원3명, 종교인3명, 사회단체장2, 언론1명, 병원장1명, 약사1명, 사업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위원회

한사협의 업무를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조정위원회, 조사연구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출판·홍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별 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둔다(정관 제 40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다. 또 전문위원회 구성은 조사연구위(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연구위원 총 10명), 정책조정위(총 11명), 교육훈련위(총 8명), 국제협력위

(총 9명), 출판홍보위(총 9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사협의 경우 실무위원은 자문위원 21명을 비롯하여 기획조정위원 16명,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6명, 사회복지학교 운영위원 22명 (자문3명,교장,교감,학생과장,교무과장,서무과장,연구과장 각1명, 강사13명), 자원봉사안내센터 운영위원 24명(소장1명, 실무위원11명, 교육위원 12명), 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위원 27명, 복지전화 운영위원 12명 (복지교육 및 상담위원), 출판홍보위원 17명, 공부방 운영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조직은 사업에 따라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며, 기능은 사업별 직능을 참고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직한다.

4. 사무국

지방 시군구지역에서 당면한 지역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4인체제(전임사무국장 1인, 전문직원 2인, 사무직원 1인) 이상이 되어야 하겠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은 회장단,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전임사무국장 1인, 전문직원 2인, 사무직원 1인의 4인체제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7년 2월부터 재가노인파견사업을 위탁 받아 파견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97년 10말 현재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의 보수규정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직원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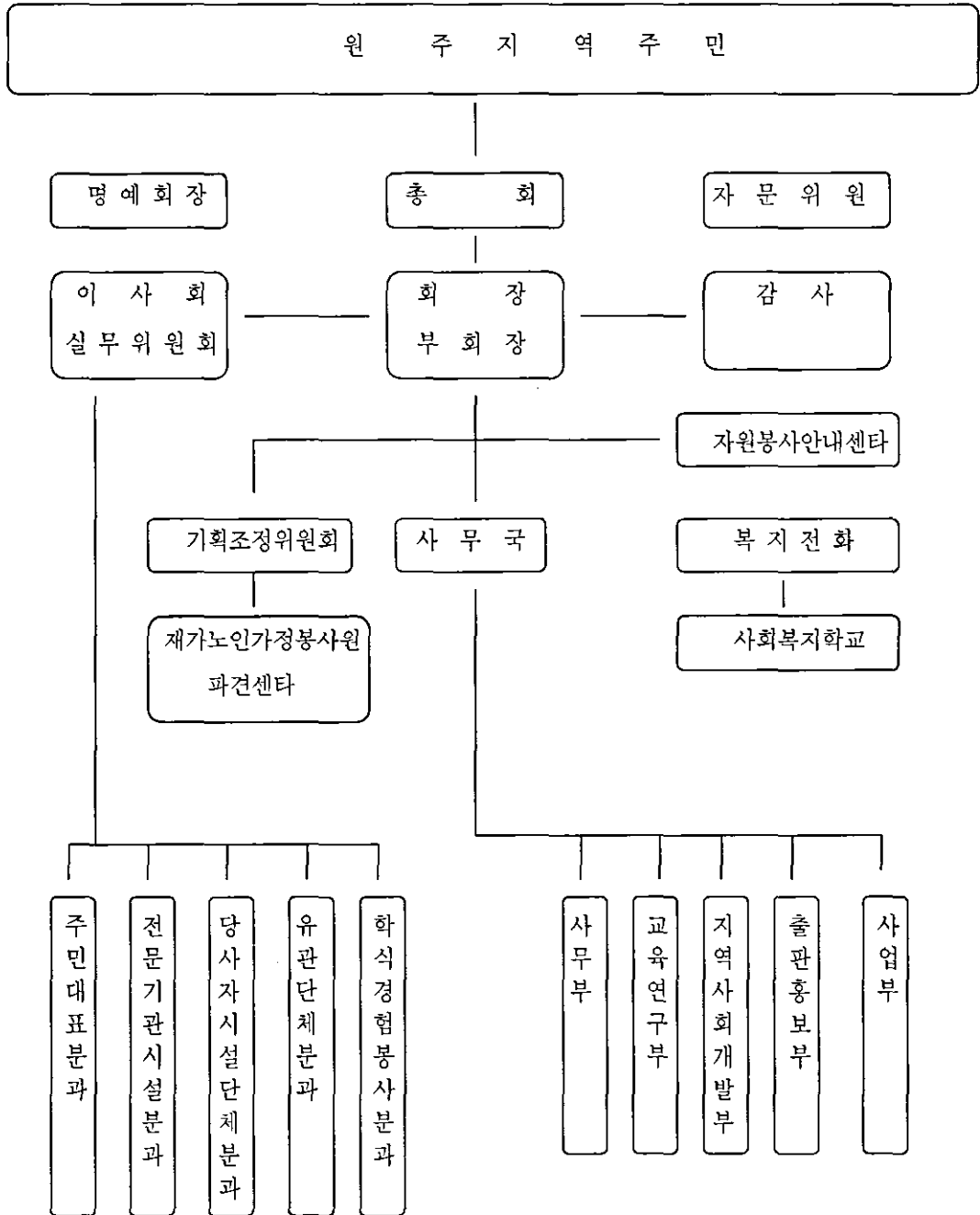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업무분담 예시 】

▶ 서무부분

1. 복지활동전문직원의 업무

-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입안
- 2) 사회복지에 관한 홍보·복지교육·정보제공활동의 추진
- 3) 사회복지운동 (social action)
- 4) 위원회활동
- 5) 지역조직화에 관한 중점사업
 - (1) 소지역주민복지활동의 촉진
 - (2) 요원호자·가족의 조직화
 - (3) 지역주민의 주민의식·태도변화, 복지에의 참가·협력촉진

【 원사협의 조직구성표 】



6) 복지조직화에 관한 중점사업

- (1) 관계단체·기관·사회시설의 서비스수준향상을 위한 활동원조와 그 협동촉진
- (2) 사회복지지원연수,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 협동화 촉진
- (3)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7) 보호집단의 조직화, 레트워활동의 추진

8) 불런티어 활동의 추진

9) 주택복지서비스의 기획·개발·추진

10) 민간자금의 조성(공동모금·연말연시불우이웃돕기운동 등의 추진)

11) 활동의 평가

2. 재가복지서비스 추진원의 업무

1) 재가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조사의 기획·실시

- (1) 지역내의 요보호자 실태파악
- (2) 개별 복지서비스의 파악과 진단

2) 재가복지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 (1) 니드에 기초한 재가복지서비스 의 기획·시스템 설계
- (2) 서비스의 수급조정
- (3) 재가복지서비스의 운영

3) 재가복지서비스추진에 관한 조정

- (1) 재가복지서비스추진협의회의 운영
- (2) 각종 서비스위원회의 운영
- (3) 사회자원의 조달 및 조정
- (4) 각 전문기관·단체와의 연계촉진

4) 주민에의 정보제공활동 (홍보지 등)

5) 재가복지서비스의 평가

3. 불런티어 활동추진원(코디네타)의 업무

1) 불런티어 활동추진을 위한 조사·기획·실시

- (1) 지역내의 불런티어 활동에 관한 실태파악
- (2) 개별 불런티어 활동의 니드파악
- 2) 정보의 정비 및 제공활동
 - (1) 정보리스트 정비
 - (2) 활동사례의 메뉴 만들기
 - (3) 소식지, 회보 발행
 - (4) 정보교환모임 등의 개최
- 3) 학습의 원조 및 강의 제공활동
 - (1) 불런티어교실 개최
 - (2) 자주학습에 대한 상담조언
 - (3) 상호학습의 알선
 - (4) 강의 제공
- 4) 상담조언 내지 수급조정활동
 - (1) 니드파악과 적절한 활동의 조직화
 - (2) 개인불런티어, 불런티어 그룹의 조직화
 - (3) 불런티어그룹·개인에 대한 상담·조언·원조
- 5) 불런티어센터 기능과 타기관·단체와의 연계
 - (1) 지역내, 타기관·단체와의 연계
- 6) 복지교육의 추진
- 7) 활동의 평가

4. 서 무

- 회의(운영위원회) 의사록 작성, 사업계획, 보고서, 예산결산서 작성--국장 이하 전원
- 직원의 신분, 급여, 복지후생에 관한 자료작성--사무국장, 사무직원
- 문서접수, 발송업무, 정관, 제규정의 제정, 개폐, 정비업무, 기타 정관기계의 사무일반업무--사무국장, 사무직원

5. 회 계

- 각종 회계의 금전출납, 보관업무, 각종보조금, 조성금, 교부금의 수지경리업무, 재원상환에 관한 자료작성--사무국장. 사무직원
- 각종 복지자금의 관리, 각종 모금, 회비에 관한 업무, 기타 회계에 관한 업무--사무국장, 사무직원

▶ 업무부분

1. 지역조직화활동

- 지역복지문제조사활동의 실시--사무국장, 전문직원
- 지역복지조성, 재가복지활동의 계획,입안(활동개발과 실시)--사무국장, 전문직원
- 홍보활동, 복지교육활동의 실시, 소지역주민복지활동의 조성(지역간담회, 당사자·가족모임, 그룹활동원조)--사무국장, 전문직원
- 블런티어활동의 육성 및 공사관계기관, 단체, 시설과의 연락조정--사무국장
- 복지전문위원회, 관계자회동 회의 실시--사무국장, 전문직원
- 복지대회, 복지강좌의 개최업무--사무국장, 전문직원

2. 원조사업

- 각종 상담사업업무--사무국장
- 각종 단체활동의 육성원조사무--전문직원, 사무직원
- 한사협·강사협위탁사무, 보조사업사무--사무직원

▶ 관리부분

1. 위탁사업

- 사무실관리--사무국장
- 가정봉사원, 순회상담원 등 위탁사업의 집행--사무국장, 전문직원
- 기타 협의회의 단체운영사무--사무국장

IV.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사업의 문제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강화

한사협이 갖는 기능은 ① 정부와의 관계, ② 회원 및 관련단체와의 관계, ③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④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협의회의 사업은 정관 제4조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계몽·홍보, 정책 건의, 연락 조정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들을 크게 분류하면 ①지역조직화 활동, ②복지사업화 운동, ③직접서비스사업, ④복지자금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의 ①지역조직화 활동의 내용에는 주로 일반적 지역조직화 활동으로서 소지역 주민 사업 활동과 불런티어활동 등 주민참여촉진사업이 포함된다. ②복지 사업화 운동으로서는 복지관계·기관·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동화, 복지단체에 대한 활동원조와 그 조직화, 사회복지직원·봉사자의 연수 등이 있다. ③직접서비스사업은 각종 상담, 가정봉사원, 금품 대여, 교육훈련 등이 있다. ④복지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공동모금과 기타 기부활동, 선의은행, 복지기금운영 등이다.

이러한 기능과 사업을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조직화활동과 복지사업화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접서비스사업 즉 지방사회복지협의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복지자금조성이 중요하며 지역사회계획, 사회행동 등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정부, 회원·기관단체, 지역사회와의 기능적·지역적 중간 집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하다. 특히 협의회의 재정 자립과 관계하여 공동모금등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결국 지역복지이론에 기초한 조직화 기능과 서비스기능의 통합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겠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현재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1) 정관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들 중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전통적 기능인 지역사회계획, 사회행동, 공동모금 등의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 사회계획은 사회복지사업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영역인 만큼 계획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또한 협의회가 특수계층의 복지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행동의 기능이 중요하고 공동모금은 복지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2) 지역사회의 기능적, 지역적 중간집단의 형태를 띤 협의회로서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측면을 연락, 조정하고 협의하는 업무가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철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편 『한국사회보장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p.441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제 사업수행에서 이러한 기능의 수행이 미흡한 상태이다.

(3) 지방협의회 활동은 그 전반적인 수준도 미흡하지만 활동도 중앙협의회 수임업무에 한하고 있다. 현재 몇 군데의 지방협의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협의회 위상을 확립하고 있지만 많은 지방협의회가 아직 재정적으로나 조직 면에서 미약한 상황에 있다.

(4) 협의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회원의 회비나 자체예산에 의해 모든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정부보조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집단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사회입법화를 위한 사회행동을 취하는 압력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주민주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의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복지론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리고 협의회 기능을 조사, 집단 토의 및 홍보 등의 방법에 의해 지역복지에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명백히 하며 적절한 복지계획을 세워 그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의 협동촉진, 관계기관·단체·시설의 연계·조정 및 사회자원의 육성 등의 조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또한 필요가 있을 경우 스스로 계획을 실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놓는 일이다. 즉 협의회 기능을 복지 계획의 수립과 이것을 위한 조직화 활동의 이론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개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 '지방협의회 육성세미나'와 '사회복지학생 실습 지도', '비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교육', 계간지 및 사회복지신문 발행 등의 출판·홍보사업 및 회원단체나 지방협의회 의견 듣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또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과 사회복지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운영이 있으며, 이웃돕기운동, 노인결연사업, 장애인자립지원, 어린이새생명돕기사업, 공판장운영, 기타 수익사업이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 지방협의회 육성,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사업이 있다.

15개 시도 지방협의회에서 전개하는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의 사업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여기서 지방협의회에서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연락·조정 사업만이 제외된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주시사회봉사안내(자원봉사)센터

원사협은 96년 1월 도내 처음으로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체계적 관리를 전담할 청소년 자원봉사안내센터를 개설했다. 자원봉사안내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이룬 및 실천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작업과 자원봉사 체험기회를 일반인들에게로 확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주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 원주시내 복지시설 기관에서 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시민 160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2) 원주시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

원사협은 97년 2월 신규사업으로 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열고 자원봉사원을 양성, 본격적으로 독거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한다. 현재 원주시 65세 이상 거택, 자활노인 150여명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가사서비스, 정서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찬서비스와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 분들에게 질 높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한편 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재가노인가정봉사원 파견을 위해 가정봉사원 교육을 실시해 '96년 12월 20일 25명의 제1기 가정봉사원과 '97년 3월 25일 20명의 제2기 가정봉사원 교육생을 배출했다. 앞으로 가정봉사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적인 가정봉사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3) 주민 사회복지교육 및 주민공청회

◆ 원주시 사회복지학교,

원사협은 주부, 직장인, 대학생,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봄과 가을로 연 2회 사회복지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제1기 1996년 6월18일부터 시작하여 34명 졸업, 2기(1996.10.15) 졸업생 50명을 배출, 지역 곳곳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3기 37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 원주시 사회복지포럼

1996년 6월 18일 제1회 사회복지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제2회 사회복지포럼을 준비한데 이어 1997년 6월4일 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회복지포럼은 지역의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복지서비스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실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포럼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제2회 포럼은 ‘성인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려 성인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갖는 의미와 이들 성인 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4) 지역 욕구조사 및 연구보고서

원주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문제 및 시민들의 복지의식, 원주지역의 복지수준, 문화시설 실태, 환경문제 등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제반 복지문제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원주지역의 복지 실태를 알리고 이를 기초로 지역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한다. 그 동안 원사협에서 발행한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 * 송정부, 유만희, 박경희, 최예리 “원주시 청소년자원봉사교육교재”, 1996.1.8.
- * 송정부, 김연명, 백선희, “원주지역복지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1996.5.27.
- * 송정부, 박경희, “원주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조사” 1996.6.1.

5) 자원봉사 현장실천

- * 대학생 자원봉사 교육,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및 현장학습 - 원주시내에 있는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전문대, 상지전문대생들의 자원봉사교육 4회 164명
- * 중.고교생의 자원봉사 교육 및 현장학습, O 영원산성복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O 현충탑 및 원주천변 자연보호활동 O ‘녹색환경의 나라건설’ 캠페인 참여 O 현충일 행사 참여
- * 청소년 자원봉사 담당자 평가회의 1회
- * 결연, 후원사업 추진 O 한전 원주지점 여직원회 대상자 후원금 전달 연결 O 원여중 정은경 후원금 모금 전달 연결 (모친 심장병 수술 중 사망, 생활보호대상자) O 일반결연 2건(쌍용주유소 - 하창용(소년소녀가장)15만원, 김주화(소년소녀가장) 10만) 재가결연 1건(곽미자 - 거택보호 노인 1만원) O 일반후원 5건(홍윤표, 김영화, 최양자, 문병선, 박무순)

- * 기업체의 신입사원의 자원봉사교육 및 봉사실천 ○삼성전자 신입사원 자원봉사 활동 연결
○학습부진아 자원봉사자 연결(명륜종합사회복지관, 포도마을, 명륜2동사무소)

6) 회비 및 후원회비

원주지역 복지시설, 기관 및 사회단체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및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원사협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및 단체 회원을 수시로 모집하여 원사협 사업에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원사협 회비, ○ 개인 및 단체의 년회비와 평생회비 ○ 개인정회원 : 연2만원 이상, ○ 단체정회원 : 연3만원 이상, ○ 개인평생회원 : 30만원 이상, ○ 단체평생회원 : 50만원 이상,
- * 일반주민의 후원회비, ○ 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 차량구입을 위한 특별후원

7) 원주시 사회복지 대축제

- 1996.10.26. 제1회 개최 · 1997년 10월 21일 제2회 개최

복지대회, 복지사업, 복지시설, 복지대상자라고 하면 어둡고 희망이 없는 상황만을 보통 상상하기 마련인데 앞으로 우리 원주시민들은 “복지”를 희망과 전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복지축제라고 하여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자원봉사자, 공무원,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희망의 축제를 예술제, 문화제, 체육대회 등을 통합한 시민복지모임으로 승화시키고자 시도한 축제이다.

8) 주민토론회의 정례화 및 연구회 (금요세미나)

지역주민들의 더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리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교수, 학생, 시설 단체종사자,공무원등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더 효율적인 복지 기능을 수행키 위해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연구한다.

회원은 사회복지관련 시설, 단체 종사자,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수,학생등 기타 사회복지에 관심 있고 뜻이 있는 모든 분은 참여가 가능하다.

연구방향으로서는 사회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 지역의 복지문제와 관련한 복지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아동,청소년,부녀,노인,장애인복지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 사회복지와 관련한 학문(개론,개별,집단,지역사회조직,조사방법,정책,실습등)연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성화 모색 등을 토론하여 실천방향을 모색한다.

제1회(5월2일) 보호관찰 청소년에 관한 연구 (김형방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회(5월16일) 간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대책 (송자경 원주기독병원 사회사업과장)

제3회(9월5일)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김형식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9) 자원봉사의 지속적 실천 및 홍보

* 자원봉사자 조직---자원봉사단 조직 활동을 민간부문에서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일상화시키 고자 동. 통. 반의 조직을 시도하여 전체 주민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와 풍토를 조성하 려고 한다. 또한 동. 통. 반을 중심으로 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노인, 장애인돕기 운동에 대한 토론문화 정착에 주력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소식지 발간<원주사회복지> 1997.3. 창간호 발행---지역의 사회복지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의 사회복 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3월 소식지 『원주사회복지』 창간하여 현재 계간지로 발행 하고 있다.

10) 사회복지학과 실습생 지도

전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및 대학원생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현장 실습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원주지역 복지를 위한 지역운동의 실천 차원에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원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토론하며 실천한다. 즉 자 원봉사안내 및 노인재가봉사안내센터, 사회복지실무자연수회,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간담회, 일 반지역주민토론회, 사회복지학교, 자원봉사교육, 사회복지포럼 등 지역의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다.

V.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확보 문제

1. 협의회의 운영비와 사업비

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공동모금, 보조금, 위탁비,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협의회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주요한 사항이며 자주적인 재원강화가 우선 중요하다. 재정자립을 위해

회원들의 회비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공동모금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 즉 지방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계획의 확립, 지역복지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국비, 지방비로서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사회복지협의회회의 근본 문제는 재정 자립이다. 재정 자립을 위해 공비와 함께 주민회비, 공동모금을 빨리 시행해야 하겠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협의회회의 적극적 정(치)책 활동이다. 즉 지방의회(광역·기초의회) 상임위원회에 사회복지분과 설치와 지방의원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인정하는 지방의회와 지방공공단체의 제도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비, 지방비로서 지역협의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재원현황은 협의회 자체의 순수 사업비와 운영비는 없다. 그러나 나 협의회가 1997년 2월부터 재가노인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자원봉사안내센터 운영 및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실 등을 위탁 운영하여 직원의 봉급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즉 1) 회원회비는 협의회 운영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2)안정적인 수입원인 국고 및 지방비 지원금은 없으며 3)협의회의운영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입원은 재가노인자원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 및 각종 프로그램후원 수입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의 경우 단체정회원 회비는 년 3만원 이상, 개인정회원은 년 2만원이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단체와 개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회원의 회비납비율은 50%정도밖에 안되며 사무국 운영비(인건비)는 공비(위탁사업 : 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사업)로 하며 활동비는 자기자금(민간재원)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재원의 방향은 협의회가 순수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 지방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 또는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운영재원은 지원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1)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지역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충당 2) 중앙과 지방정부 및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지원유도 3) 민간주도하에 추진될 지역공동모금회에 의존 4) 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역공동모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의 욕구 조사, 정책 건의, 교육·훈련, 홍보, 연락조정, 지역복지봉사센터의 운영, 사회복지자원 개발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지역복지봉사센터 즉 자원봉사자의 동원, 교육, 배치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복지자원 개발 즉 모금 운동 등의 물적 자원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 복지관련 모금, 자원봉사 및 모금활동 성금, 재해대상자 모금, 사회복지사업기금 모금,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썰, 구세군의 자선남비 모금, 백만인건기모금 운동 등 여러 형태의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주민참여가 되고 있을 뿐 지속적인 주민참여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강요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역에서 모금되는 기금이 반드시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지는 것도 아니다.

지역사회의 민간 모금운동이나 기타 물적 자원 동원은 이와는 다르게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내며 또 지역사회에 복지수준을 높이고 다양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복지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한다는 점도 기존 모금 형태와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모금운동의 전개는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물적 자원 동원은 사회복지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모금운동이 대표적이다. 원주시민이 생각하는 모금 주체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사회복지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2%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지하고 있는 언론기관에는 10%만이 응답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체가 되는 모금운동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활성화 하려면 무엇보다 기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이 개정되어야 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모금운동의 장애요인인 사회복지기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VI.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제

1. 지역협의회의 발전방안

1) 지역복지에 있어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치

지방정부와의 관련성으로서 원주시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공사 내지 민 관의 역할을 잘 분리하여 상호 협조적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실행하고 있다. 민간복지사업을 후원하여 주기 위해 시장과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과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행하기 위해 사회과 내에 복지지원계를 설치하여 민간복지사업에 대해 지원업무를 보고 있다. '복지지원계'를 두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사회복지협의회를 담당 지원하는 市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안다. 각종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원주시는 지원, 후원, 협조하고 있다.

지방의회와의 관련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할 때부터 원주시의원들의 관심으로 직접 참여하는 의장, 의원이 많았다. 그러나 의회의 내용중 사회복지정책 및 사업에 관한 질의와 대답 내지 안전상정이 적다. 그리하여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원주의 사회복지에 대해 정책건의도 활발하게 진행하려 한다.

지역내의 시민단체,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사회문제,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고자 연대회의를 하려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운영위 이사 등에서도 시민단체장 내지 직능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의 집합체로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으나 서로 고유사무와 지역사회에 있어 각 기관 단체가 행하는 고유업무가 있고 기득권도 있어 관계형성을 이룩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외의 기존 기관, 단체와 연합이 계속적인 과제로 되어 있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로서 중앙(한사협)과 시도협의회와의 관련은 원사협의 처음 출발할 때 창설멤버들의 모두 기존의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었으며 한사협으로부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시범조직 승인(한사협 문서번호 복지 105-566호), (강사협 문서번호 95-141)이 지방협의회 규정 제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8월28일 있었다. 이러한 조직승인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승인 이후 원사협과 강사협, 한사협은 상호협조아래 복지사업 내지 활동에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시도, 시군구에서도 원사협의 모형을 문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소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속속 출현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리라 전망하다.³⁾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와 주민의식

사회복지육구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원주시민들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47.1%가 응답함으로써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으며, 그 방안의 하나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을 찬성하는 응답자가 95.6%에 이르렀다. 이 협의회에 가입할 의사를 가진 주민들은 조사대상자의 약 69.7%였고 자원봉사활동 또는 후원금을 냄으로써 지역복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각각 53%, 52%인 조사 결과를 볼 때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3)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자료집 1995 p.13

<표1>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주체

(단위 : %)

| 자기 스스로 | 주민 스스로 | 시·군·구청 | 중앙정부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6.1 | 47.1 | 34.3 | 10.4 | 1.7 | .3 | 100.0 |

<표2>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필요성 및 회원가입 의사

(단위 : %)

| 필요성 | 필요하다 | 95.6 | 필요하지 않다 | 4.4 | 합계 | 100.0 |
|--------|------|------|---------|------|-----|-------|
| 회원가입의사 | 있다 | 69.7 | 없다 | 30.0 | 무응답 | 0.3 |
| | | | | | 합계 | 100.0 |

<표3>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의 기여방법

(단위 : %)

| 직접참여는 힘들 | 자원봉사활동 | 약간의 후원금 | 자원봉사와 후원금 | 무응답 | 합계 |
|----------|--------|---------|-----------|-----|-------|
| 15.5 | 31.9 | 30.9 | 21.3 | 0.5 | 100.0 |

조사결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1년간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의 15.9%에 불과하였지만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는 16.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4>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및 참여의사의 비교

(단위 : %)

| | 봉사활동 참여경험 | 봉사활동 참여의사 | 협의회 조직후 참여의사 (비가입자 포함한 전체) | 협의회 조직후 참여의사 (가입자의 경우) |
|------|-----------|-----------|----------------------------|------------------------|
| 응답비율 | 15.9 | 16.5 | 37.1 | 53.2 |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삽입해 지역복지협의회에 관한 기초적 인식을 심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가입 의사를 물었다.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협의회 기여방법을 묻는 질문에 회원가입의사가 있는 사람의 53.2%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 전체를 고려한다고 해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37.1%에 이른다. 이것은 앞서 아무런 전제 없이 자원봉사 참여의사를 물었던 16.5%와는 좋은 비교가 된다. 즉, 지역주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부설로 운영중인 자원봉사안내센터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해 낸다면 원주시의 인적 자원 활용의 문제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원봉사가 개개인의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참여로 인해 사회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공동체의 민주적 해결 능력을 보강해 주고, 기존 체제나 제도상의 경직됨을 돕는 새로운 자극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해결책에 있어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는 면 등에서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긍정적 요소도 지닌다.⁴⁾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운영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장래는 지방협의회 발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활동이 중앙협의회의 수입 업무에 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개선과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기능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또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중앙협의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되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소지역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여 지역별 사회복지협의회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과의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성을 살린 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하거나 또 공공복지 전달체제와 연계방안을 확립한다. 특히 복지위원, 아동위원, 자원봉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근본 문제는 재정 자립이다. 재정 자립을 위해 공비와 함께 주민회비, 공동모금을 빨리 시행해야 하겠다.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조직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회장의 민간화 (2)이사회의 정례화와 역할분담 (3)새로운 복지과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회의 운영 (4)전문성을 가진 사무국 직원체제의 충실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은 주민 주체의 원칙에 기초한 시·군·구의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면서 시도 및 전국의 각 단계에서 계통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겠다. 즉 시·군·구를 사회복지협의회 기본단위로 본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실정에 따라 ①주민의 자치 기구, ②기능별·계층별 각종 주민 조직 ③아동복지지도원·부녀 복지 상담원 ④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보건위생관계자 및 단체 ⑤사회복지·보건 위생·경생보호관계의 시설 및 단체 ⑥사회복지·보건 위생·사

4) 송정부 김연명 백선희 『원주지역 복지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1996. p. 30

회교육 등의 관계행정기관의 대표자 또는 지역담당자 ⑦자원봉사자 및 단체 ⑧주민생활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보호, 생협, 환경단체 등)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그리고 지역협의회 조직방향은 시군구가 기초가 되는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1)기본전제로서 (1)시·군·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협의회로 구성되어야 하고, (2)지역사회복지문제 해결에 있어 공·사가 상호협력하는 공·사 공영조직(公營組織)이어야 하며 (3)지역사회에서 민간복지활동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조직의 방향은 (1)회원의 가입범위를 전 주민으로 확대하고 임원의 구성도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하고, (2)현재 사회복지기관 대표자 중심에서 모든 지역주민의 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각종 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개선하며 (3)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범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사업개발

김영모교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강화되고 개발되어야 할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⁵⁾.

첫번째는 비체계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사업들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협의회나 지방협의회의 사업 모두 자체사업에 비해 위탁사업의 비중이 매우 큰 데 부적절한 사업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협의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기금 보조 등에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협의회와 각 지방협의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회계 결산 및 사업보고에 대한 공동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사업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현재 중앙협의회나 지방협의회의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중앙협의회나 지방협의회 모두 연락·조정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지방협의회 육성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4) 이웃돕기운동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지방협의회 사업 중 가장 활성화된 것이 지역복지정보센터이긴 하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6) 지방협의회의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7) 지방협의회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더욱이 지방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개발되어야 할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정관상에 새로 포함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계획 그리고 사회복지자원의 적절한 분

5) 김영모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7 P.107

배 내지는 분배의 조정과 같은 기능들이 현 정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관상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방협의회에서 해당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지방협의회에 새롭게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먼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다. 3) 지방협의회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요보호자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4) 한사협이나 시도협의회는 요보호 아동 및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문제(환경, 교통, 문화예술, 스포츠 등)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모금운동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5) 지역의 관계공무원 및 복지위원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교육이 필요하다. 7)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 추진의 중심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즉 ① 주민니드·복지과제의 명확화 및 주민활동의 추진기능 ② 공사사회복지사업 등의 조직화·연락 조정 기능 ③ 복지활동·사업의 기획 및 실시기능 ④ 조사연구·개발기능 ⑤ 계획책정, 제언·개선운동 기능 ⑥ 홍보·계발기능 ⑦ 복지활동·사업의 지원기능 등이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제화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법정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⁶⁾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제 27조(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사협”이라 한다)를 둔다 라는 조항은 지역 단위의 독립법인화된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첫째, 동법 22조 1항의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에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를 둔다’라는 조항은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고 사협조직의 기본이 주민과 밀접한 조직체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가 기구 조직 및 사업 운영면에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종속적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

6) 김영모 전제서 p. 151-154

문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즉,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둘째, 동법 23조 2항 4호의 대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과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 조항은 자율적인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예산·결산·사업보고 및 감사 등).

셋째, 동법 제 24조 1항 임원에 관한 조항인 ‘협의회에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3인을 둔다’라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사회 의 기능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사의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즉, 전국적인 기구인 한사협의 경우와 시·군·구 차원의 사협의 이사 수는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수도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폭 넓게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사회단체의 설립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 개정 방향

회원 관련 사항

첫째, 한사협의 정관 2 제 5조 제 6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자격)에 ‘이 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1조 제 1항 각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정회원(단체회원, 개인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상의 협의회 회원 규정이 폭 넓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협의 정관은 이것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많은 제한점을 두어 회원 가입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정관 제 6조 2항의 정회원 중 개인회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사회복지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사회복지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호는 전부 폐지하고 협의회의 개정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즉,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둘째, 정관 제 8조(회원의 탈퇴) ‘지방협의회 의 회원은 지방협의회 회장에게 탈퇴원서를 제출 하여 지방협의회 운영위원회 의 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협의회 회장은 이 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지방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협의회 회장은 이 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지방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항

정관 제 60조(지방협의회)이회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협의회를 둔다. 시·도·군·구를 명시한다. 그리고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화될 경우 한사협 정관상의 지방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립된 법인체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5. 지역사회복지운동

정부가 지방자치를 시·군·구의 기초단체와 시·도의 광역단체에 실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공약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아이템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의 제각각의 개별적인 욕구는 힘과 설득력이 없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각자의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역의 복지사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더 팽배해 있으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들의 시민운동 즉 지역사회복지운동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운동의 결정체는 아직도 조직되고 있지 못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하루 속히 조직되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의 사회복지문제 내지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은 지역주민의 자주적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주민의식으로 소지역의 사회복지운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사회복지의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주민주체의 이념 아래 주민의 니드와 지역의 생활과제에 기반한 복지활동, 지역조직화하며 동시에 2)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사회복지위원, 주민조직, 당사자 단체 등의 참가에 의한 지역복지를 유지하는 조직기반의 정비에 노력하고 3)지역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서 총합적이고 계획적이며 일원화로 유지하는 공사협동의 활동을 실현한다는 사회복지협의회 조직·활동의 원칙, 기능, 사업 등의 지침을 정부와 민간이 책정하도록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주민참가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1)지역사회복지협의의 조직화, 복지 당사자의 조직화, 자원봉사자의 조직화 2)지역의 사회복지정책과제 및 주민복지의 욕구·실태조사, 3)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 자원봉사활동에 운영 4)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에 대한 문제제기와 예산확보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실시하며 실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VII. 결 론

지역복지협의회의 성격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며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 밖에 생활개선 향상에 관련 있는 공사 관계자의 참가, 협력을 얻어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과의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성을 살린 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 한다. 또 공공복지 전달체제와 연계방안을 확립한다. 특히 복지위원, 아동위원, 자원봉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은 주민 주체의 원칙에 기초한 시·군·구의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면서 시·도 및 전국의 각 단계에서 계통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겠다. 즉 시·군·구를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단위로 본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는 지역 실정에 따라 ①주민의 자치 기구, ②기능별·계층별 각종 주민 조직 ③아동복지지도원·부녀 복지 상담원 ④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보건위생관계자 및 단체 ⑤사회복지·보건 위생·생생보호관계의 시설 및 단체 ⑥사회복지·보건 위생·사회교육 등의 관계행정기관의 대표자 또는 지역담당자 ⑦자원봉사자 및 단체 ⑧주민생활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보호, 생협, 환경단체 등)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협의회의 적극적 정(치)책 활동이다. 즉 지방의회(광역·기초의회) 상임위원회에 사회복지분과 설치와 지방의원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인정하는 지방의회와 지방공공단체의 제도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 이것은 홍보부족과 적극적인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

협의회의 조직을 주민주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시·군·구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며 시·도 및 전국적 단계로 발전시킨다. 즉 시·군·구를 사회복지조직의 기본단위로 위치를 부여한다.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주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민의 요구를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운동체적 기능과 주민참여 기능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운동체적 기능은 교통사고방지, 놀이터 만들기, 공해방지운동, 보육시설 설립 등이며, 참여적 기능은 재가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외상노인, 장애인사업 등이다.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회장의 민간화 (2)이사회와 정례화와 역할분담 (3)새로운 복지과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회의 운영 (4)전문성을 가진 사무국직원체제의 충실과 강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중앙협의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되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토록 하거나 공공복지 전달체계 확립방안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복지사무소에 상근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령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법 정관을 개정하여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즉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협의회 및 시·도·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화되어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활동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재원의 방향은 협의회가 순수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 지방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 또는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운영재원은 지원 받을 필요가 있다.